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범주로 편입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영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제2항 중 “영 제25조제1항제2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9조 중 “영 제25조제1항제5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2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1항제7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25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1. ~ 6. (생 략)	1. ~ 6. (생 략)	1. ~ 6. (생 략)	1. ~ 6. (생 략)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
조제1항제1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
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영 제2
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
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
다.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
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

-----.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

-----.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

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 제7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③ (생략)

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 제7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

②·③ (현행과 같음)